

1. 개정이유

신체검사 시 다양해진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명확히 검출하고자 약물검사의 구체적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약물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해양경찰청장이 정함(안 별표 4)
- 나. ‘50미터 수영’에 대한 점수기준을 정함(안 별표 5)
- 다. 조문 상 오기를 바로잡음(안 제23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1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영 제16조제3항제5호”를 “영 제16조제3항제6호”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② (생략) ③ <u>영 제16조제3항제5호</u> 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④ (생략)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영 제16조제3항제6호</u> ----- ----- ----- -----.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생략) ② <u>법 제10조제4항</u> 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8. (생략) ③·④ (생략)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10조제3항</u> ----- ----- ----- ----- ----- -----.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생략)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 5. (생략) ③ (생략)	1. ----- -----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2.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체격 및 질환 항목 중 **약물검사**,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여 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 수영(남여동일)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50미터 수영(초)	40 이하	41 ~50	51 ~60	61 ~70	71 ~80	81 ~90	91 ~100	101 ~110	111 ~120	121 이상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수영**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악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